

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12. 24(목)

문교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9. 11. 6.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09. 11. 6.

라. 상정일자 : 2009. 12. 16(제178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최종설
- 검토보고 :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○ 제안이유
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

○ 주요내용

- 징수금액(안 제2조)
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근거 마련

- 조례의 문장 표기를 간결하고 쉽게 표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. 3.27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임.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0조제1항에는 “학교의 설립·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”고 규정되어 있고,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」 별표 1(별치참조)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·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”을 규정하고 있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임.

2009학년도 인천광역시 학교별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 현황

(단위: 원)

| 분야 | 학 교 명 | 설립 구분 | 입학금 | 수업료 | | 비고 |
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
| | | | | 분기액 | 연액 | |
| 일반계 | 공·사립고 | 공·사립 | 17,100 | 350,100 | 1,400,400 | |
| 국제고 | 인천국제고 | 공립 | 17,100 | 350,100 | 1,400,400 | |
| 과학고 | 인천과학고 | “ | 17,100 | 350,100 | 1,400,400 | |
| 외국어고 | 인천외국어고 | 사립 | 480,000 | 1,081,800 | 4,327,200 | 자율결정 |
| 예술고 | 인천예술고 | 공립 | 17,100 | 350,100 | 1,400,400 | |
| 체육고 | 인천체육고 | “ | 17,100 | 350,100 | 1,400,400 | |
| 전문계고 | 공·사립고 | 공·사립 | 17,100 | 350,100 | 1,400,400 | |

- 기타부분은 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”¹⁾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,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함

1) 법제처에서는 2006년 1월부터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」 사업추진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- 이명숙, 정종섭, 최병덕 의원
 -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임.
 - 영종에 추진중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규모는?

< 답 변 >

- 기획관리국장 최종설
 -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은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나, 행정지도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음
 - 공항공사에서 영종지역에 추진중으로 규모는 24학급에 정원 600명임

5. 토론요지

- 가. 찬성 : 김용근, 이명숙, 오홍철, 정종섭, 이병화, 최병덕 위원
- 나. 반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 : 6명)

7. 기타 특이 사항

- 없음

- 붙임 : 1.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·사립의 각급 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"를 "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"로 한다.

제2조 중 "학교"를 "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정한다.

1. 유치원
2. 초등학교
3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6조에 따른 특성화 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
4. 영 제9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
5.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
6.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
7. 영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
8. 고등기술학교
9. 각종학교

제3조제2항 중 "의한"을 "따른"으로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전기 또는 전월"을 "전체 분기 또는 전체 월"로 하며, "당해"를 "해당"으로 각각 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외의 부분 중 "별표 1에 의하여 4기"를 "별표 1에 따라 4분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"의한다"를 "따른다"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중 "동급의 학교"를 "같은 급의 학교"로 각각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당해"를 "해당"으로 각각 하고,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중 "개시"를 "시작일"로 각각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교부"를 "지급"으로 각각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과오납"을 "잘못 납부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"반환사유"라 한다)에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"법령에 의하여"를 "법령에 따라"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며, "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"를 "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"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"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2조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하며, "접수개시일"을 "접수시작일"로 한다.

별표 2 반환사유 발생일란 중 "개시일"을 "시작일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5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·사립의 각급 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----- -----.</p> |
| <p>제2조(징수금액)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한다)·고등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 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한다)·고등기술학교·각종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.</p> | <p>제2조(징수금액)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의----- -----다 만,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유치원 2. 초등학교 3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6조에 따른 특성화 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. 영 제9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5.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6.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7. 영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8. 고등기술학교 9. 각종학교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3조(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· 감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법령에 <u>의한</u>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<u>당해</u>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학교의 수업을 <u>전기 또는 전월에</u>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<u>당해</u> 분기 또는 <u>당해</u>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| <p>제3조(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· 감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법령에 <u>다른</u> 수업료 및 ----- -----대하여 <u>해당</u> 법령이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전체 분기 또는 전체 월에</u> ----- ----- -----<u>해당</u> 분기 또는 <u>해당</u> 월의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4조(징수방법) ① 학교의 수업료는 <u>별표 1에</u> 의하여 4기(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)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<u>의한다</u>.</p> <p>1. 설립자가 동일한 <u>동급의 학교에</u>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.</p> <p>2. 설립자를 달리하는 <u>동급의 학교에</u>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 징수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| <p>제4조(징수방법) ① ----- <u>별표 1에 따라 4분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<u>따른다.</u> 1. -----<u>같은 급의 학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<u>같은 급의 학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5조(징수기일) ①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, <u>당해</u> 기 또는 <u>당해</u> 월의 <u>개시</u>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.</p> <p>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<u>개시</u>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<u>교부</u>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<u>교부</u>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.</p> | <p>제5조(징수기일) ① ----- ----- <u>해당</u> 기 ----<u>해당</u> 월의 <u>시작일</u> 10일 이전-----.</p> <p>② ----- -----학기 <u>시작일</u> 전 50일-----.</p> <p>③ ----- -----등을 <u>지급</u>받아 ----- -----등의 <u>지급</u>일-----.</p> |
| <p>제6조(수업료 등의 반환 등)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<u>과오</u>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<u>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“반환사유”라 한다)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.</u></p> <p>1. <u>법령에 의하여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</u></p> <p>2 ~ 4. (생략)</p> <p>5. 본인의 질병,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<u>당해</u> 학교에 <u>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u></p> <p>④ (생략)</p> | <p>제6조(수업료 등의 반환 등) ① ----- -----<u>잘못</u> 납부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----- -----.</p> <p>1. <u>법령에 따라</u>----- -----</p> <p>2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 ----- -----<u>해당</u> -----<u>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7조(공고 등) ①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7조(공고 등) ① ----- -----<u>제2조에 따라</u>----- -----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|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전에 하여야 한다.</p> | <p>②제1항에 따른 ----- -----<u>접수시작일</u>----- -----.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[별표 2]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(제6조제3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62 734 783 1122"> <thead> <tr> <th>반환사유 발생일</th> <th>반환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분기 개시일 ----- -----</td> <td>(생략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분기 개시일 ----- ----- -----</td> <td>(생략)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액 | 비고 | 1분기 개시일 ----- ----- | (생략) | | 1분기 개시일 ----- ----- ----- | (생략) | | <p>[별표 2]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(제6조제3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05 734 1430 1122"> <thead> <tr> <th>반환사유 발생일</th> <th>반환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분기 개시일 ----- -----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분기 개시일 ----- ----- -----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액 | 비고 | 1분기 개시일 ----- ----- | (현행과 같음) | | 1분기 개시일 ----- ----- ----- | (현행과 같음) | |
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액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분기 개시일 ----- ----- | (생략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분기 개시일 ----- ----- ----- | (생략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액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분기 개시일 ----- ----- | (현행과 같음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분기 개시일 ----- ----- ----- | (현행과 같음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